

(첨부 4)

비밀유지확약서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매도자”라 함)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매각(이하 “본 거래”라 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본 거래에 따른 매각주간사로 선정(이하 “매각주간사”)하고 본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매각주간사가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본 거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매도자 및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확약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잠재적 투자자는 본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관련된 비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 또는 매각주간사가 잠재적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임직원과 대리인, 변호사, 자문사 등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매각주간사로부터 제공되는 투자설명서(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 기타 회사의 평가를 위해 매각주간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제공하는 자료 및 본거래와 관련하여 잠재적 투자자가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기술, 영업, 유·무형 자산, 관리 및 재무 등을 비롯한 회사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

비밀정보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각주간사와 회사의 임직원 등에 의한 공개 이전에 공개되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 (공공영역의 정보). 단,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잠재적 투자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잠재적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비밀정보를 본거래를 위한 회사의 가치평가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비밀정보는 잠재적 투자자(잠재적 투자자의 임직원 포함)와 잠재적 투자자의 대리인 및 자문사 등(잠재적 투자자가 본거래를 위하여 선임 또는 운영하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모든 관련인을 의미) 모두에 의해 비밀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 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 ① 비밀정보는 본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목적 등으로 잠재적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대리인, 자문사 및 임직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정보가 잠재적 투자자의 대리인 및 자문사 등에게 제공될 경우,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를 사전에 매각주간사에 통보하고 본 확약서의 구속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면 약속을 대리인 및 자문사 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잠재적 투자자가 대리인 및 자문사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잠재적 투자자는 잠재적 투자자의 대리인 및 자문사의 비밀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회사, 매도자 또는 매각주간사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잠재적 투자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및 자문사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잠재적 투자자는 지체 없이 사전에 매도자 및 매각주간사에 이를 알리고 대응 방향 및 공개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비밀정보공개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잠재적 투자자는 매도자 및 매각주간사의 서면동의 없이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비밀정보도 공개 할 수 없습니다.

2. 본거래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잠재적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임직원, 대리인 또는 자문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매각주간사, 매도자, 회사 또는 이들의 임직원이나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잠재적 투자자는 이를 배상하고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잠재적 투자자는 회사 임직원들을 본 거래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자신의 기업이나 기타 별도의 법인에 채용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잠재적 투자자와 접촉하도록 유도하여서도 안됩니다.
4. 잠재적 투자자는 매도자 및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 등 어떠한 사실도 공개할 수 없으며, 만약 본 항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매도자 및 매각주간사에게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잠재적 투자자는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요청하거나 접촉하여야 합니다.
6. 잠재적 투자자는 매각주간사의 요청 시, 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및 매각주간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련한 모든 유형의 자료(서면, 디스켓, 동 서면이나 디스켓의 복사본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전부를 매각주간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본거래와 관련하여 잠재적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대리인 또는 자문사 등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모두 파기되어야 합니다.
7.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본 협약서의 제시 및 잠재적 투자자로부터의 본 협약서의 접수는 본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안 또는 수락의 행위가 아닙니다.
8. 본 협약서의 제반 의무사항은 매각주간사가 본 협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9.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결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0. 본 협약서의 어느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본 협약서는 그 조항을 제외한 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11. 매도자, 회사 또는 매각주간사가 본 협약서 상 어떤 권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그러한 권리, 권한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부분적 또는 일회적 행사가 향후의 그러한 권리, 권한의 추가 행사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12. 매도자 및 매각주간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본 협약서의 조건의 변경이나 포기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매도자, 회사 및 매각주간사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고 그에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정보의 진실성,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하지 않으며, 잠재적 투자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잠재적 투자자가 본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참여는 잠재적 투자자 스스로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의한 결정임을 확인합니다.

한편, 잠재적 투자자는 회사 주식의 인수를 위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각주간사 또는 매도자가 정한 본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또한 그와 관련하여 매각주간사 및 매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귀중

당 잠재적 투자자는 위의 사항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서명) 합니다.

2010년 7월 일

[단독입찰 참가서]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컨소시엄 구성서]

컨소시엄명칭:

컨소시엄 대표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컨소시엄 참가자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